



제427회국회(임시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지역사회 연계를 고려한 직업재활 조치 강구 등 〉

■ 최보운·서미화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244호)

2025. 7.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전문위원 한석현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지역사회 연계를 고려한 직업재활 조치 강구 등	2

I. 제안경위

2024년 12월 5일 최보윤·서미화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12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고 있고, 고용노동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인에 대한 직업상담, 직업적성 검사 및 직업능력 평가의 실시와 고용정보 제공 등 직업지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훈련 및 재활, 근로 및 고용에서 장애인에게 최대한 독립성과 통합성을 보장하도록 하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장애인의 고용 및 직업재활은 농어촌지역을 포함한 장애인 자신의 지역사회에서 근접한 곳에서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장애인 직업지도는 장애인 개인에 맞는 개별화고용계획 작성이 포함되도록 하는 등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전단, 제10조, 제43조 및 제75조제4항 신설).

Ⅲ. 검토의견

1.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고려한 직업재활 조치 강구 등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①국가와 지자체가 장애인 직업재활 조치 강구 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추가하고, ②장애인 직업지도 시 개별화고용계획 수립을 포함하도록 하며, ③고용노동부장관이 재활실시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요원의 교육훈련과정을 개발·지원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임(안 제3조제2항, 제10조제1항 및 제5항, 제43조제2항, 제75조제4항)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주·장애인,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한 지원과 <u>장애인의 특성을</u> 고려한 직업재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고,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	② ----- ----- ----- <u>장애인의 특성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u> 를----- ----- ----- -----

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
활을 중요시하여야 한다.

제10조(직업지도) ① 고용노동부장
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인에
대한 직업상담, 직업적성 검사 및
직업능력 평가 등을 실시하고, 고
용정보를 제공하는 등 직업지도
를 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비용
지급 및 용자·지원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제43조(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설립)

① (생략)

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생략)

2. 장애인에 대한 직업상담, 직업

-----.

-----.

제10조(직업지도) ① -----

---그 결과를 기초로 하여 장애
인 개인별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계획(이하 “개별화고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며 고용정보를 제
공하는 등 직업지도를 하여야 한
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개별화고용계획의 내용 및 절
차, 제3항-----

-----.

제43조(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설립)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현행과 같음)

2. -----

적성 검사, 직업능력 평가 등 <u>직업지도</u> 3. ~ 12. (생 략) ③ (생 략) 제75조(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 등) ① ~ ③ (생 략) <u><신 설></u> ④ (생 략)	----- <u>직업지도 및 개별화고용계획 수립</u> 3. ~ 12.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75조(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u>고용노동부장관은 제9조제2항에 따른 재활실시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요원의 교육 훈련과정 개발 및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u>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	---

나. 검토의견

유엔장애인권리협약¹⁾은 장애인이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가진 존재임을 알리고, 모든 권리와 자유를 완전히 평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만든 국제 인권 조약으로, 2006년 12월에 열린 제61차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었음. 우리나라는 2008년 12월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2009년 1월 발효되었으며, 2022년에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를 비준하며 협약 이행 의무를 가진 회원국이 되었음.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 사회가 고려하고 실행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정한 국제적

1)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약속으로, 우리 정부는 장애를 이유로 한 어떠한 형태의 차별 없이 장애인의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의 완전한 실현을 보장하고 촉진하기 위한 의무를 부담하여야 하고, 장애인의 권리를 위해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함.²⁾

한편,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고 있고, 고용노동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하여는 장애인에 대해 직업상담, 직업적성 검사 및 직업능력 평가 실시, 고용정보 제공 등의 직업지도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행법이 훈련, 재활, 근로 및 고용에서 장애인에게 최대한 독립성과 통합성을 보장하도록 하는 UN 장애인권리협약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현행 규정에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취지를 반영하려는 것으로, 국가·지자체 등이 직업재활 조치 강구 시, 장애인의 특성 외에도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고려하도록 하고(안 제3조제2항), 장애인 직업지도 시 장애인 개인에 맞는 개별화고용계획 작성을 포함하도록 하며(안 제10조제1항), 고용노동부 장관이 재활실시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요원의 교육훈련과정을 개발·지원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75조제4항).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서는 장애인이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에서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게 삶을 향유할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사회·제

2) 참고: 장애인권리협약 공식 번역문(<http://hrlibrary.umn.edu/instree/K-disability-convention.html>)

도적으로 뒷받침할 것을 천명하고 있는바,

개정안이 장애인이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에서 직업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유형에 상관 없이 공평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자립적인 삶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의 의의가 있어 보임.³⁾

다만, 현재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당사자의 욕구를 고려해 장애인 개인별 고용지원 계획을 수립·지원하고 있는데,

(고용노동부)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에 대해 공단 내 전문상담인력을 통해 상담·직업평가를 거쳐 ‘개인별취업활동계획’을 사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서비스 제공 중

*'17년부터 시행된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는 22개 공단지사에 135명의 전문상담인력을 두고, '24년 현재 1.3만명에게 개인별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있음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법」 제21조 등에 따른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사업을 통해 직업재활수행기관의 사례관리담당자가 직업상담·직업능력평가를 거쳐 직업재활계획 수립

개정안은 고용서비스 참여를 희망하는 모든 장애인에 대해 개별화 고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 경우 취업알선 기간·절차가

3) 제3조 일반원칙

- 가. 천부적인 존엄성, 선택의 자유를 포함한 개인의 자율성 및 자립에 대한 존중
- 나. 비차별
- 다.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 참여 및 통합
- 라. 장애가 갖는 차이에 대한 존중과 인간의 다양성 및 인류의 한 부분으로서의 장애인의 인정
- 마. 기회의 균등
- 바. 접근성
- 사. 남녀의 평등
- 아. 장애아동의 점진적 발달능력 및 정체성 유지 권리에 대한 존중

늘어나거나 행정기관의 행정부담이 증가할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개정안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재활실시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요원의 교육훈련과정을 개발·지원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한 것은(안 제75조제4항) 현재 재활실시기관⁴⁾의 전문요원의 경우 각 소관 법률에 따라 자격요건을 정하고,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전문요원 교육훈련과정 개설 필요성에 대해서는 타기관 법규정 및 사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구분	근거법령	인력기준	자격요건	교육훈련
특수교육기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0호	특수교육교원	특수학교 정교사(1·2급), 일반 정교사 중 특수교육 전공자 등	국가·지자체는 특수교육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정기 교육·연수 실시 (특수교육법 제8조)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 제2호	시설장, 총무, 훈련교사 등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장애인재활상담사, 기타 직업재활·특수교육 전공자 등	국가·지자체는 장애인복지 전문인력 등을 양성·훈련하는데 노력 (장애인복지법 제71조)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 제3호	시설장, 사무국장, 직업훈련교사 등	직업재활·특수교육 전공자, 사회복지사, 장애인재활상담사 등	
장애인 복지단체	장애인복지법 제63조	-	보건복지부에서 단체 목적사업 수행이 가능한 인력·시설·재산 등을 갖추었는지 개별 평가하여 설립인가	

고용노동부는 장애인의 생활터전인 지역사회와의 유기적인 연계·협업을 통한 직업재활 서비스 제공 필요성에 공감하나,⁵⁾ 지역사회의 자

4) 특수교육기관,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단체,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5) 현재도 장애인고용공단은 지역의 장애인복지시설·기업 등과 연계·협업하여 취업알선·직업훈련 등을 지원 중

원·특성 등을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적극적 역할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아울러, 개정안과 같이 직업지도를 희망하는 장애인의 개인별 특성에 맞는 고용계획 수립을 통한 취업지원을 위해서는 전산시스템 등 인프라 마련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539

* 장애인고용공단과 지자체·직업재활실시기관(전국 총 56개소)이 연계하여 구인구직 정보 공유 및 취업알선 공동 수행

** 장애인고용공단 지사-지역기업-지역 장애인복지기관 등이 협업하여 기업 맞춤형 직무개발